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09. 02. 04

전면개정 2014. 09. 23

개정 2014. 11. 25

개정 2016. 05. 09

개정 2020. 02. 24

제1조 (목적) 이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등(이하 “관련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과 처분, 취득과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과 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산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4.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5. “집합투자업”이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과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1) 집합투자업자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 받는 금전
 - 2) 판매회사보수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3) 신탁업자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 5)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 6)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7)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일회적으로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 8)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③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유사전략, 동일구조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수준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구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법시행령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성과보수의 제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계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는 법 제76조 제5항의 한도를 적용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⑦ 동일한 모집합투자구에 투자하는 복수의 자집합투자기구 등 실질이 동일한 집합투자기간에는 수수료·보수 수준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소규모 투자신탁 해소를 위한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전환 등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의 체계) ① 투자자와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을 지급(이하 “기본형” 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 이라 한다)
3. 성과수수료만을 지급(이하 “성과형” 이라 한다)
- ②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 ③ 혼합형 또는 성과형의 경우 운용성평가 기준지표(BenchMark)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

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기본수수료의 계산) ①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수수료는 기준금액에 기본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요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회사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수수료 계산시의 기준금액을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가액으로 할지는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성과수수료의 계산) ①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운용한 결과 만기일 현재의 투자자산평가액(이하 “만기평가가액”이라 한다)이 기준자산가액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율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음의 성과수수료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서 계산한다.

유 형	기본형	혼합형	성과형
요 율	성과수수료없음	[(만기평가가액 - 기준자산가액)의 증가율 - 기준수익률] 초과분 × (성과수수료 요율)	

② 제1항에서 성과수수료 요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회사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기준수익률(Huddle Rate)은 회사와 투자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기준자산가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최초로 계약하는 재산의 기준자산가액은 본 계약 당시의 투자일임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후 잔존하는 계약의 기준자산가액은 1호의 기준자산가액에서 가목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구한다.

가. 해지 처리되는 기준자산가액

$$= \text{계약해지금액} \div (\text{해지전일 자산평가가액} \div \text{해지전일 기준자산가액})$$

나. 설정 처리되는 기준자산가액

$$= \text{추가설정금액} \div (\text{해지전일 자산평가가액} \div \text{해지전일 기준자산가액})$$

3.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해지가액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일부해지에 대한 성과수수료}) = [\text{해지전일 자산평가가액} - \text{해지전일 기준자산가액} \times (1 + \text{성과수수료기준수익률} \times \text{경과한 계약기간의 일수} \div \text{계약기간})] \times (\text{성과수수료 요율}) \times \text{계약해지금액} \div \text{해지전일 자산평가가액}$$

④ 기준수익률을 기준지표(BenchMark)와 연계하여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기준지표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자산의 평가)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산의 평가는 법 제238조 집합투자자산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수수료 인상)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

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제11조 (수수료의 고지) ①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시기, 금액 등의 투자일임 수수료의 부과에 관련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금액 등의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2014.11.25.)

제12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징수하는 방법(이하 “선취”라 한다)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이하 “후취”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취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운용성과가 투자자와 계약상의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며, 고객은 [별지 제2호]에 따른 성과수수료 계산내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또는 계약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해지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선취금액 중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 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6.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정보의 공시)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timefolio.co.kr)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제정 및 개정은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제정) (2009.2.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에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9.23)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23일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4.11.2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5.9)

제1조 (시행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에 따른 사명변경으로 인하여 규정상의 ‘타임폴리오투자자문’ 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으로 변경하여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0.2.2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목록 ***

[별지 제1호] 투자일임 수수료 지급 및 산정방법 확인서

[별지 제2호]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계산보고서

[별지 제3호] 투자자문계약 성과수수료 계산보고서

[별지 제1호] 투자일임 수수료 지급 및 산정방법 확인서

투자일임 수수료 지급 및 산정방법 확인서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게 됩니다.
2.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기준금액, 수수료율,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구분	기준금액	수수료율	지급방법
기본수수료	계약금액, 순자산금액	연 1.00 %	계약시 선취 1년 후취

3.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기준지표(BenchMark), 기준수익률(Huddle Rate),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구분	기준지표	기준수익률	수수료율
성과수수료		연 5.00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00%

- 3-1.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3-2. 재계약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기준금액은 재계약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투자일임계약기간 중에 추가적인 설정 및 일부의 해지가 일어나는 경우에 수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시: 기본수수료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잔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수수료를 수취하며, 성과수수료는 신규설정으로 간주하여 기존계약기간을 계약기간종료로 하여 계산합니다.
 - 해지시: 선취된 기본수수료가 있는 경우는 계약잔여기간에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성과수수료는 해지분의 기간성적을 반영하여 정산하여 계산합니다.
5. 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은 매1년으로 하며,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납부시기는 청구일(계산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납부합니다.

[별지 제2호]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계산 보고서

투자일임계약 수수료 계산 보고서

(기준일자: yyyy-dd-dd)

1. 계약사항 및 운용실적

고객명				
기초계약정보	❶ 기초계약금액		❸ 계약기간	
	❷ 기본수수료율	%	❹ 성과수수료율	%
			❺ 기준지표(BenchMark)	%
			❻ 기준수익률(Huddle Rate)	
운용실적	평가금액			
	수익률(수수료차감전)	%		
	수익률(수수료차감후)	%		
	기준지표(BM)대비			

2. 설정해지내역 및 성과수수료 계산내역

계약금액 변동	① 기준자산가액		②+④-⑥
	② 기초자산금액(계약)		기본·성과수수료기준
	③ 추가설정금액		
	④ 추가설정가액		펀드의 설정좌수에 해당
	⑤ 일부해지금액		
	⑥ 일부해지가액		펀드의 해지좌수에 해당
성과수수료의 계산	⑦ 기준수익률 수익		①×⑥
	⑧ 수수료차감전 평가액		기준일 순자산가액
	⑨ 초과수익		⑧-①-⑦-(③-④)+(⑤-⑥)
	⑩ 성과수수료		⑨×④
	⑪ 수수료차감후 평가액		⑧-⑩

□ 투자일임계약서상 자동 재투자 조항이 있는 경우 신규되는 기초계약금액은 ⑪번 수수료차감후 평가액이 됩니다.

□ 신규계약에 따른 선취기본수수료를 일임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기초계약금액은 ⑪에서 기본수수료(⑪×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이사 ○○○

[별지 제3호] 투자자문계약 성과수수료 계산보고서

투자자문계약 성과수수료 계산보고서

(기준일자: yyyy-dd-dd)

1. 계약사항 및 운용실적

고객명 **님**

기초계약정보	❶ 기초계약가액(금액)		❸ 계약기간	
	❷ 기본수수료율	%	❹ 자문성과수수료율	%
			❺ 기준지표(BenchMark)	
			❻ 기준수익률(Huddle Rate)	%
운용펀드 (**** 펀드)	기준가격			
운용실적	평가금액			
	수익률(수수료차감전)	%		
	수익률(수수료차감후)	%		
	기준지표(BM)대비			

2. 설정해지내역 및 성과수수료 계산내역

계약금액 변동	① 기준자산가액		②+④-⑥
	② 기초계약가액(금액)		기본 자문수수료기준
	③ 추가설정금액		
	④ 추가설정가액		펀드의 설정좌수에 해당
	⑤ 일부해지금액		
	⑥ 일부해지가액		펀드의 해지좌수에 해당
자문성과수수료 의 계산	⑦ 기준수익률 수익		①×⑥
	⑧ 수수료차감전평가액		기준일 순자산가액
	⑨ 초과수익		⑧-①-⑦-(③-④)+(⑤-⑥)
	⑩ 자문성과수수료		⑨×④
	⑪ 수수료차감후평가액		⑧-⑩

○ 자문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는 운용펀드(**** 펀드)의 자산운용보수로 계상 되었습니다.

(자문계약서 제21조 3호)

○ 상기내역을 확인하신 후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의은 당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 533-8940)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대표이사 ○○○